



회계 · 계약 운영 관련

1. 특허품이 주재료인 물품의 수의계약에 따른 질의

【질 의】

- 특허, 의장등록된 제품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제품의 조달 요청시 수요기관에서 디자인, 시공 및 주재료에서 단순 비교품이 없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가능한지 여부.

※ 주재료의 비율이 전체공정의 80%이상.

【회 신】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에 의한 수의계약은 당해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어느 특정인이 아니고서는 제공할 수 없는 제품생산 등에 있어 품질 · 기능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 이나 대체품목이 없는 경우에 가능한바



- 대용품 또는 대체품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용역 실적증명 발급에 대하여 질의

【질 의】

- 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용역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당해용역 이행실적발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 래 -

1. 심사대상업체가 이전에 기관 및 단체등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하도급 형식(계약은 미체결)으로 용역에 참가한 후, 대금지급을 받기 위하여 원도급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 이후 심사대상업체가 협회에 세금계산서만으로 실적(원도급업체에 용역을 이행한 것으로)을 신고하였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런 실적만으로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러한 형식의 실적증명으로 용역의 실적을 인정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62호)〈별 표〉추정가격 2억원미만 기술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주2)의 규정에 “당해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귀 질의 경우 원도급업체의 하도급을 맡아 사업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하도급을 인정하고 있고 하도급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외에는 원도급업체가 실적증명서를 발급 하는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입니다.

3. 하자보수 관련 질의

【질 의】

- 하자보수 기간중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 신】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에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 신고서 제출기일)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지체상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사유에 해당됩니다.

4.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 질의

【질 의】

- A지역 도로공사를 A업체가 시행하던중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전면취소(사업변경)될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 A지역 공사가 중지될 경우,
질의1) A지역이 아닌, B지역으로 사업변경하여 계속해서 A라는 업체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토록 해도 가능한지?
질의2) 새롭게 입찰하여 B지역의 도로공사를 A업체가 아닌, 타업체로 시행토록 해야 되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



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것이나

- 귀 질의와 같이 사업내용은 동일하고 위치만 변경 되는 것 이라면 현재시공자가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당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5. 하자보증금 청구에 대하여 질의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외현금업무 담당입니다.
공사준공시 하자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를 하였고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인이 현재 법인등기부상으로 해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청구는 누가 할수 있는지?

【회 신】

-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반환하는 것임.
- 당해 법인이 폐업(파산말소등기)되었다면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반환이 불가능한지 문제는 민사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69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시·도(시·군·자치구)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6. P·Q 및 적격기준 경영상태 평가방법 관련 질의

【질 의】

- 신규면허 업체의 재무비율 평가에서 매출액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 등 항목 중에 분모 분자가 0인 경우. 즉, 영업이익, 매출액이 0원 인 경우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요?
- 신규면허인 경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의 내용중에는 이런경우의 계산방법이 없습니다.
 - 영업이익:0, 매출액:0 (0/0) = 0% 라고 무한대로 보아 A등급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최하평점(E)으로 평가하는지?
- 산출근거 미제출시 (영업활동현금흐름등의 미제출시) 최하등급(E)으로 평가하는지? 0점으로 평가하는건지요?

【회 신】

질의1에 대하여 매출액도 없고 영업이익도 없는 경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우므로 적격심사 경영상태평가를 하는 기본 원리에 위배되므로 최하평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질의2에 대하여 산출근거를 미제출했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나,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토록 되어 있음(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제3항)

7. 연대보증인 보증시공 청구 관련 질의

【질 의】

- 00중학교 다목적실 증축공사를 2004.9.20일 56,000,000원에 계약기간은 2004.9.20 - 2005.2.18로 계약체결 하고 이후 계약금액이 변경 20,000,000원 증이 되어 총 78,000,000원이 되었고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등을 반영하여 계약기간은



2005. 6. 18까지로 변경되었으나 계약상대자에게 발주기관을 제3 채무자로 압류 및 가압류가 670,000,000원이 걸려있는 상태이고 4. 13일 현재 150,000,000원의 기성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권 압류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로 인하여 노무비를 받지 못한 노무자들이 전원 철수하여 4.22부터 5.19일 현재까지도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44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준공기한인 2005.6.18까지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2005.5.6일 에 계약 상대자에게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 및 부정당업자로의 제재를 하겠다고 처분사전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막연한 답변을 제출해 왔고 2005.5.26까지 답변을 다시 주겠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현재 공정이 30%정도 진행되어져 있고 , 정상적으로는 준공기한까지 공사 준공이 힘들고, 한달여가 넘게 공사현장의 방치로 안전사고의 발생우려가 있으며, 노무비 자재비 체불 등으로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공사포기 없이 일방적으로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무리가 없는지요.

【회신】

- 보증시공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2조 및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8조에 따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에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 발주처에서 계약상대자의 이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8. 공동도급 계약시 공사를 포기한 탈퇴구성원의 계약보증금 귀속여부 질의

【질 의】

- 공사명 : 상수도 및 누수복구 공사 연간 단가계약(도급자: 상수도사업본부)
 - '05. 2. 25: 전문건설업체 A사와 B사가 공동도급계약체결(공동이행방식, 연대보증인 없음)
 - '05. 5. 20: 전문건설업체 B사 공사포기서 제출
 - '05. 5. 24: A와 공사이행 계속여부 의견조회
 - '05. 5. 28: A사와 연대보증인을 구성 변경계약 체결 (새로운 구성원 없음)
- 공동수급구성원인 B사의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잔여구성원 A사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제12조에 의거 A사가 연대보증인을 세워 변경계약체결하고 계속 공사를 이행을 하고 있음에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조에 의거 B사의 계약 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하는 지 여부
- 발주처 의견
 - 갑설 : 계약에 관한 법률 51조 위반이므로 B사의 계약보증금을 귀속 시켜야 한다
 - 을설 : A사가 연대보증인을 세워 계속 공사시행 하므로 B사의 계약 보증금은 귀속시킬 필요가 없다

【회 신】

- 「지방재정법시행령」제7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제1항에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서 일부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연대보증인 포함)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탈퇴한 구성원이 납부한 계약보증금 또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계약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사유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9. 준공검사시 계약담당공무원 입회 관련 질의

【질 의】

- 각종공사 준공 검사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회를 원칙으로 하는지요?
- 계약담당 공무원의 입회없이 준공검사공무원만이 검사에 참여 검사조사를 작성 지출 해도 무방한지요?
- 그리고 준공계접수시 공사감독을 경유해서 접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부서에 서 접수하여 사업부서로 통보하여야하는지요?

【회 신】

-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7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위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공사계약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첨부 관련 질의

【질 의】

-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붙임서류에 공사일반조건을 꼭 첨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에 어떠한 방법으로 표기하여야지만 첨부를 하지않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법적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계약은 私法上的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
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 대한 세부이행
기준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시 정하고 이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
며, 쌍방간의 분쟁이나 이견이 있을 경우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이러한 공사계약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은 하되 서류첨부를 생략하는 경우 이러
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백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적용 관련 질의

【질 의】

-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와 이견이 있었고, 발주처(공사감독)에서는 지자체공사라 하여 행정자치
부의 관련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질의합니다.
- 현황1)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 현황2) 동예규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바, 발주기관
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 포함)로써
- 현황3)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동 예규 제20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당
사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질의1) 지자체 발주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건설
산업기본법” 등 건설법령에 적용 여부?
- 질의2) “현황3”과 같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게 되어 있으나 발주기관
(공사감독관)에서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에 대해서 무조건 낙찰율
을 적용토록 강요하고 있는데 타당한지?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은 적용대상이며 지방재정법령및 국가계약법령 적용 (준용포함) 문제는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궁극적으로는 관련공기업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신규비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당초 산출내역서에 있는 재료비, 노무비 등을 각각 구분검토 하여 신규비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2. 물품구매 관련 질의**【질 의】**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구입과 관련 질의합니다.
- 추진상 문제점
 - 현재 이의제기 되는 내용(A업체) :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는 특허가 된 것을 사양에 넣은 것이 특정업체 물건을 납품받기 위한 행위라는 것과, 자신들이 납품하려는 물건이 당초 우리시가 제시한 사양내역이 동등이상의 물건이기에 납품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
 - 예상되는 문제점(B업체) : 아래 사양 내역이 아닌 다른 물건(A업체)을 납품할 시 공고문 사양서와 상이하므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질의1) 물품사양서에 특허를 득한 사양으로 입찰공고한 것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

질의2) 문제가 있다면 처리방법은?

질의3) 계약업체가 납품하고자하는 품목의 성능이 동 사양서와 동일이상인 경우 납품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회신】

○ 물품의 제조·구매 경쟁 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처서는 아니 되며 규격·성능 등으로 제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서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 “사” 목의 규정에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특정(특허)물품이 아니면 당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자료입증 및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지방서에서 동등이상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고 있다면 납품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것은 지방서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

13. 설계변경(건설폐기물처리용역)대상 여부 질의

【질의】

○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건축물 철거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공동도급(중간처리업체, 운반업체)으로 일반공개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준공처리하려 합니다. 폐기물 운반비의 경우 설계내역서 상의 운반거리와 폐기물처리장까지의 실 거리에 따른 운반거리차에 의해 운반비를 설계변경(정산)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예)

- 계약내역서 55 km이내 이나 폐기물처리장까지의 실거리 45km이면 거리차이인 10km



에 대한 금액을 감정산 하여야 하는지?

- 계약내역서 40km이내 이나 폐기물처리장까지의 실거리 50km이면 거리차이인 10km에 대한 금액을 증정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의 규정에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당초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와 동조 제3호의 규정에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관련 질의

【질 의】

- 당사는 서울지역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조경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 현재 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당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실제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율 적용에 대해 문의 합니다.(당초 신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에 계산오류가 있음.)

【회신】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일반관리비율은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입찰공고 관련 질의

【질 의】

- 국가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인 발주기관에서 전자제한경쟁 입찰을 함에 있어
- 당초입찰서 제출기한이 2005년5월30일 17:00까지였고 개찰이2005년5월31일 11시였습니다. 이미 2개이상의 회사가 상기 기간내에 정상 투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개찰일인 2005년5월31일 오후에 개찰사항을 확인하여보니, 정상입찰을 했던 우리 회사는 입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러한 이유는 발주기관에서 당초 건설기준법에 의한 시설물 유지관리업 조달청 등록 업체만 참석할수 있도록 하였으나 투찰당일 몇 개 회사가 항의하자 사업자등록증상 일반 시설물 관리회사(용역회사)도 투찰할 수 있도록 전산을 변경하면서 개찰일인 당일 날 상기 전산 변경 및 투찰일 개찰일을 당초에서 투찰마감은 2005월31일 15:00시 개찰은 당일 17:00시로 연장하여 개찰을 하였습니다.
- 이러한 갑작스런 변경으로 기존에 입찰을 보았던 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였기에 재투찰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규정상 정확한 공고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회신】

- 경쟁입찰 공고를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쟁입찰은 반드시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함.
 - 이 경우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하여야 함.
 -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음.
- 입찰공고의 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고를 하여야 하며 긴급한 경우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 물품구매입찰 관련 질의

【질 의】

- 물품 구입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 구입품목 규격서의 내용으로 광학해상도 600dpi이상과 광원 RGB LED로 세부규격을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저가 입찰로 A업체가 낙찰되어 입찰공고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품하지 않고 다른 센서방식의 제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입찰 공고시에는 2가지 센서방식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센서는 CCD(Charge Coupled Device:전하 결합 소자)와 CIS(Contact Image Sensor:밀착 센서)의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서로 장·단점이 있고 어떤 방식이 우수한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의1) 입찰공고된 구입품목 규격서 그대로인 도면칼라 스캐너를 납품받아야 하는지?

질의2) 아니면 CIS 방식이 아닌 CCD방식으로 납품을 받아도 계약 상에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하는 물품구매의 경우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은 회계에

규 「물품구매일반조건」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지체상금 관련 질의

【질 의】

○ 공사 계약을 토목, 건축, 조경 부분에 대하여 총액계약을 하였으나 준공검사에서 조경 부분에 대하여만 재시공 지시를 하였을 경우

질의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2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지체일수를 재시공 완료계 제출일까진지, 아니면 검사완료일까진지 여부

【회 신】

질의1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발주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인 바, 동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발주처에서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하는 시설공사에서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는 지체일수에 산입됨을 알려드립니다.